

#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신용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3. 11.

발의자 : 신용현 · 최도자 · 임재훈

이동섭 · 김수민 · 김삼화

김성식 · 황주홍 · 박경미

송희경 · 박선숙 · 김성수

金成泰 의원(13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국공립대학교 여성 교수 비율을 25%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「교육공무원법」이 소관 상임위를 통하여 법제화를 앞두고 있음. 그런데,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여성 교수 비율이 10.5%로 국공립대학교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「고등교육법」상 대학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혈행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하여야 한다는 적이 있음.

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)

제12조의5 신설 등).

##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01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5부터 제12조의9까지를 각각 제12조의6부터 제12조의10까지로 하고, 제1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2조의6(종전의 제12조의5)제5항 전단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12조의6”을 각각 “제12조의7”로 하고, 제12조의8(종전의 제12조의7)제3항 중 “제12조의5”를 “제12조의6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5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)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대경과기원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정관으로 정한다.

③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

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,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⑤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법률 제1601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법률 제16013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<u>제12조의5(양성평등을 위한 임용 계획의 수립 등)</u> ① 대경과기원은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② 대경과기원은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정관으로 정한다. ③ 총장은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과학</p>

제12조의5(교원의 임면) ① ~ ④

(생략)

⑤ 총장은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.

##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.

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
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  
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  
야 하며,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 
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 
있다.

⑤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 
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.  
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 
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12조의6(교원의 임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

-----제12조의7-----

